

부산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458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45834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31 선고 2018가단504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윤규원

변론 종결 2020. 11. 13

판결선 고 2020. 12. 11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31. 선고 2018가단504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6. 12. 21.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31,346,6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346,6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라.

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을 제9, 2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한편, D은 2004. 8. 10. M으로부터 부산 북구 K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41,000,000원 지급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63,000,000원 인수조건으로 매수하였고, 2004. 9.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D가 이 사건 분할협의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 2/9지분을 포기하고 그 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D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D는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상당액인 23,000,000원, 기타 비용으로 2,049,880원,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인 O에게 반환한 임대차 보증금 중 22,000,000원의 합계 47,049,88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특별수익분을 공제한 D의 구체적 상속분은 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로써 D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판결 등 참조).

2)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판결 참조),

따라서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2012다26633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10, 11, 15, 17, 26호증(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 묘은 배우자인 F를 통하여 2004. 9. 13. 자신의 P조합(이하 이라고만한다) 계좌에서 27,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25,049,880원[=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중 잔금 23,000,000원 + 법무사비용(등록세 등) 1,763,000원 + 근저당권설정비용 286,880원]을 D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직접 법무사에게 지급한 사실, ② 망 면은F를 통하여 2004. 9. 14. 위 P 계좌에서 52,1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52,000,000원과 D으로부터 받은 11,000,000원을 더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인 O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63,000,000원을 반환한 사실, ③ D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4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위 P 계좌로 입금하여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망 E으로부터 합계 47,049,880원(25,049,880원 + 52,000,000원 - 3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망 E이 D에게 증여한 돈의 액수와 그 성격 등을 비롯한 전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이 증여받은 돈은 그 성격상 상속관계에 있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상당하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D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 보면, ① 상속재산의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주식회사 G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I의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97,258,160원(= 222,258,160원 - 75,000,000원 - 50,000,000원)이고, ② 이에 위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D의 법정상속분은 32,068,453원((97,258,160원 + 47,049,880원) x 2/9)이므로, ③ 여기에서 특별수익분을 공제한 D의 구체적 상속분은 0(= 32,068,453원 - 47,049,880원)이 된다.

3)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를 D의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판사 한혜진판사 강현준

별지